

드라마 <보고싶다>로 알아보는 미성년자 성폭행사안 등

화제를 낳으며 많은 인기를 얻었던 수목드라마 <보고싶다>에 관련된 포스팅입니다. 명품아역들의 순수하고도 아름다운 첫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더니 미성년자 성폭행사안 등에 대한 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의 드라마 <보고싶다>는 연일 연기 호평을 받는 박유천과 윤은혜, 유승호의 삼각관계에서 멜로요소뿐 아니라, 범인을 찾아가는 스틸러적 요소까지 겸비하여 여러 매력으로 시청자들을 브라운관 앞으로 끌어드렸습니다.

드라마 <보고싶다>의 줄거리를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15살, 한정우(박유찬 분)는 살인자의 딸이어서 왕따를 당하는 이수연(윤은혜 분)의 하나뿐인 친구가 되고, 서로의 첫사랑이 되어 지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 한정우는 한정우의 아버지와 재산다툼을 하던 측의 사주를 받아 납치를 당하는데, 이수연이 따라가서 함께 감금됩니다.



이 때 한정우는 이수연이 주의를 끈 사이도 망치지만, 이수연은 전적이 화려한 납치범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뒤 실종됩니다.

14년의 시간이 흘러 한정우는 형사가 되어 여전히 이수연을 찾아 헤메고, 이수연은 해리(유승호 분)과 함께 프랑스에서 조이라는 이름으로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극 중에서 이수연을 납치·성폭행한 범인이 복역한 뒤 출소하여 활개를 치고 다니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그 범인을 누군가가 전기충격기로 기절시킨 뒤 살인하였습니다.

이 살인을 한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 인터넷

에서 여러 가지 추측이 돌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제10회, 범인은 바로 한정우와 친하게 지냈던 경찰서 청소부 아줌마로 밝혀져 시청자들에게 반전과 충격을 주었습니다.

경찰인 한정우가 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청소부 아줌마를 쫓아가다가 아줌마의 설득에 의해 집에 들어갔는데, 청소부 아줌마가 한정우에게 사용한 전기충격기에 의해 충격을 받고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건장한 성인 남자도 한번에 쓰러뜨릴 수 있는 전기충격기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걸까요? 경찰에게 전기충격기 충격을 가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전기충격기는 법률에 의하여 소지하는데 규정이 있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총포화약법)

제2조(정의)

⑤ 이 법에서 “전자충격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에 위해를 주는 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기충격기는 법령에 의하면 전자충격기라고 명명되어 있고 단속법에 의하면, 이 전자충격기를 소지하기 위해서는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자충격기는 대통령령에 의하면 순간적인 고압전류를 방류하는 기기로, 사람을 기절시키거나 쓰러뜨린다거나, 상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무기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통해 무기제조 매매 소지에 대해 법률로 제한하거나 금지하여 무기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예방하고 감독하에 두어 공공안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이다.

극 중 청소부 아줌마는 자신의 딸의 범죄자를 단죄하려고 계획하여 전자충격기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는데요. 이러한 정황상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소지했을 가능성이 큼니다.

만약 소지자격이 없는데 소지하였을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불법으로 무기를

소지한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을 기절시킨 후에 또 다른 범죄를 하기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청소부 아줌마가 범죄자를 기절시킨 후 살인한 것과 같은 일과 같은 폭행, 살인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10회에서 한정우에게 자신의 범죄를 들킨 청소부 아줌마는 한정우에게 전기충격을 가해 쓰러뜨리는데요.

한정우는 공무집행을 하는 대한민국의 경찰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에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전기충격기 위험한 물건이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정신을 잃게 할 만한 물건으로 쓰러뜨린 뒤에 폭행등을 가해 상해를 입힌다

면 특수공무집행방해법이 적용되어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겠지요.



흉악범죄로 사회가 불안해지면서 호신용품의 일종인 전기충격기에 많은 관심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필요할 시 허가를 꼭 받고 전기충격기는 호신과 기타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돌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감탄할 만한 연기를 보여주었던 있는 박유천과 윤은혜, 아역에서 벗어나 멋지게 자란 유승호의 러브라인과 흥미로운 여러 사건들로 시청자들을 더욱 『보고싶다』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출처/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이야기)